

글 : 이경순 팀장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HACCP기준원 기획연재] 선행요건프로그램 사료 · 동물용의약품 · 음수관리

'HACCP 적용 농장 = 질병발생이 없는 농장'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농장관계자들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HACCP 적용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임상관찰을 하고 한번이라도 더 질병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HACCP을 적용하는 농장에서는 질병관리를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 운영하여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필요한 백신접종 및 주기적인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의사에 의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 농장관

리 일지에 임상관찰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농장직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오리 질병 중에 고도의 전염성이 있어 오리산업에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파코나바이러스와 아스트로바이러스가 원인체이고 3~6주령 오리병아리에게 자주 발생되는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오리장에서는 백신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육용오리장에서는 백신을 실시하거나 혹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한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비발생 증명 자료



를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생독백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바이러스 성 감염 질병이 상존한다면 수의사에 문의하거나 백신 판매 업체에 문의하여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종 법정 전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이 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급속한 질병 전파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각 시도 축산물위생연구소에서 분기1회정도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얼마전 전남 지역의 축산물위생연구소에서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HACCP을 준비하는 농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 농장주가 그것 때문에 HACCP을 못받겠다고 하면서 검사를 다시 해달라하니 하면서 때를 쓴다고 전하면서 정말로 저병원성이 검출되면 HACCP 지정을 못받는거냐고 물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HACCP 적용을 한다고 해서 질병 발생이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의 원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검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기록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농장에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종오리장에서는 전염병이나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거래되는 오리군에 대해 구입, 판매처, 운송인 등이 포함된 가족거래 기록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반입되는 오리군에 대하여 해당 오리군의 구입처(종오리업 등록증), 질병 검진내역, 예방 접종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도입 후 일정기간 동안 임상관찰을 실시하며 오리군 반입에 있어서는 방역의 안전장치로 철저한 예방백신과 소독을 계

획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출하 오리군의 위해요소 관리를 위하여 출하처, 운반자, 휴약기간, 항생제 무첨가 사료급여기간 등이 포함된 출하일지 역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HACCP 적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차단방역부터 반입 및 출하까지 농장관리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HACCP을 적용한다고 해서 아주 새롭게 해야 할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해오던 농장관리에서 조금 더 청결하게 조금 더 방역이나 질병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제까지 해오던 기록관리에서 HACCP과 연관된 약품, 출하일지 등의 기록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일을 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가면서 기록이 습관화되어간다면 HACCP 적용을 함으로써 농장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